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07

발의년월일: 2017년 10월 31일

발 의 자: 김춘수 의원(1명)

찬 성 자:김진영, 김창원, 최웅식,

김태수, 김혜런, 김동승,

김광수(도봉), 진두생.

주찬식 의원(9명)

1. 제안이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 사전협의 자체가 인·허가권자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치하고,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 정비(안 제7조)
- 나. 조례 규정의 권한의 주체를 시장으로 통일 (안 제8조)
- 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규정 신설 (안 제9조)
 - 대지면적 1만m² 이상의 경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전에 물순환 시민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 라. 제도의 절차 및 이행 재정비,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안 제11조)
- 마. 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으로 위임 규정 신설 (안 제38조)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의 위임 및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관리에 관한 사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대상 사유서(별첨)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저영 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시장 및 구청장"을 "시장"으로 한다.
- 제9조 중 각 호를 제외한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제21조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9호 중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 시화경정비사업"을 "나목부터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

건축사업 · 도시화경정비사업"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 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를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27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을 "인ㆍ허가권자는"으로 한다.
- 제11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제35조의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무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혀 했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화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 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 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 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햇하 여야 한다.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 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 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 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 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 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신설〉〉|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생략)

1. ~ 2. (생 략)

개 정 안

11- (100-12-11-1-17-10
및 구청장은 <u>저영향개발을 유도하</u>
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
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u>수 있다.</u>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
제0조(시청왕개월 가신합의) (1) <u>기정</u>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1. ~ 5. (현행과 같음)

②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야 한다.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 ①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핹 혂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 구조성사
- 4. ~ 8. (생략)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 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화경정비사업
- 10. ~ 20. (생략)
- 21.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 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 인 대상 사업
- 22. ~ 26. (생략)
- 27.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 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 는 경우만 해당한다.)
- 28. ~ 44. (생략)
- ② <u>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u> 「자연재 해대책법」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빗물관리 시설 설치결과를 시 소관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u> 〈〈신설〉〉</u> 조

개 정 안

3	. 「	공공주택	특	<u>별법</u> 」
4	 ~ 8. (°	 현행과 같음	-)	
o 1	· 목부터 리 ·주택재건	 목에 따른 축사업·도시 . (현행과 7	시환경정비	
2 3	l. <u>「주택</u>	. (연행과 7 법」제2조제 성사업 또는]12호에	
		. (현행과 7 상시설법」 	- - /	세 <u>9호</u>
		 . (현행과 7 -건자는		
소	- 치결과를	 <u>-</u> 제2항의 제35조의	물순환	통합
		<u>에 입력하여</u> 의 위임)①		

- 에 속하는 제8조, 제11조, 제12 조에 따른 사무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 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 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